



제 986 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2011- 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지침 일부개정규칙 2
공 고	
○ 공고 제2011- 677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 공고 제2011- 678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 공고 제2011- 679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귀반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6
○ 공고 제2011- 6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고 8
○ 공고 제2011- 68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 26
○ 공고 제2011- 691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33
○ 공고 제2011- 6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 35
○ 공고 제2011- 697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 공시송달 공고 41
고 시	
○ 고시 제2011- 4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마수동 소2-10호선 외 2개 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3
○ 고시 제2011- 44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45
○ 고시 제2011- 45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및 고시 46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5월 27일

남동구 예규 제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체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및 성희롱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
2. 위촉직 위원 : 남동구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3명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성희롱 예방 및 심의와 관련한 여성위원의 비율 및 위원의 위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 (제11조제3항)
 -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성희롱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하 여성공무원
 - 위촉직 위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제11조제5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6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체납 고지서
2. 공고기간 : 2011년 5월 25일 ~ 2011년 6월 13일
3. 대 상 자 : 김순희
4. 주 소 : 인천 남구 주안8동 1525-20 선경쉐르빌 103동 701호
5. 납부금액 : 금22,115,480원
6. 납부대상자께서는 2011.06.13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1.06.30까지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453-2472)

2011. 05.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6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체납 고지서
2. 공고기간 : 2011년 5월 25일 ~ 2011년 6월 13일
3. 대 상 자 : 김병수
4.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동 631-33 101호
5. 납부금액 : 금158,030,550원
6. 납부대상자께서는 2011.06.13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1.06.30까지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453-2472)

2011. 05.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1 - 679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자동차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안신원 외 7명 (별첨)
2. 공시송달기간 : 2011.05.25 ~ 2011.06.09 (16일간)
3. 내 용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위반
4. 참고사항

: 처분통지서 수령대상자는 2011.06.09일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 453-2914)로 오셔서 독촉고지서 및 자동차 압류예고서를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 FAX453-2919)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 대한 독촉고지서 및 자동차 압류예고서 우편물이 반송 대상자

회계년도	과목	부과번호	납부자성명	납부자상태	부과일자	물건명	최초납기	납기일자	부과금액	채납금액
20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000093-00	이동섭	거주자	2010-11-12	인천86바9921	2010-12-13	2011-05-02	100000	100000
20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000001-00	안신원	거주자	2011-02-17	인천86바9809	2011-03-21	2011-03-21	100000	100000
20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000003-00	유충호	거주자	2011-02-17	인천81바2610	2011-03-21	2011-03-21	100000	100000
20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000005-00	유영철	거주자	2011-02-17	인천84바1578	2011-03-21	2011-03-21	100000	100000
20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000007-00	김현옥	거주자	2011-02-17	인천85아3203	2011-03-21	2011-03-21	100000	100000
20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000009-00	김영환	거주자	2011-02-17	인천84바9464	2011-03-21	2011-03-21	100000	100000

부과구분	납부자구분	우편번호	주소		
수시분	개인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수시분	개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수시분	개인	405-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시분	개인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수시분	개인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수시분	개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6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주요개정 내용**

1)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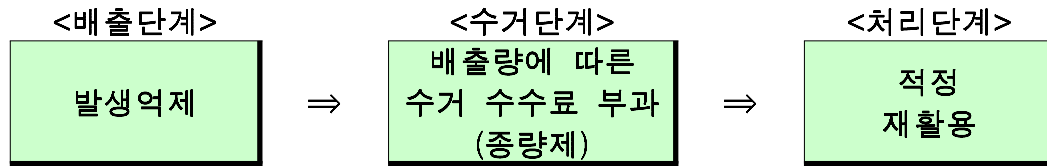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기본원칙(제4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

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찬기이용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활성화 등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제9조)

가.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 반영

3)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가.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제8조 및 제16조)

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제15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제16조)

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 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제16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61, FAX 453-2559)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관리주체에서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 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7월 1일까지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⑥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⑯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⑰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illegible]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68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79.8km²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62.91km²

※ 재지정기간 : 2011년 5월 31일 ~ 2012년 5월 30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km ²)
합 계			2,342.71
수도권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	소 계		1,279.8
	수도권	서울특별시 광진·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일원,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김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양주시 일원	481.25
	부산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798.55
	대구권	대구광역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광주권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	

	대전권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 충남 연기군 일원	
	울산권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일원	
	경남권	창원·김해·양산시 일원	
수도권 녹지·용 도·미지 정·비도 시지역	소 계		1,062.9 1
	서울 특별시	종로·용산·광진·중랑·도봉 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 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일 원	71.7
	인천 광역시	중구·동구·남구·서구·연수구· 남동구 · 부평구·계양 구 일원	187.44
	경기도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용인·평택·시흥·군포·화성· 김포·광주·하남·오산·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파 주·양주시 일원	803.77

2. 금번 해제지역(해제일자 : 2011년 5월 31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km ²)
합 계			2,153.5 5
		소 계	1,339.5 3
수도권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	서울시	성북구 정릉·성북동, 강북구 우이·수유동, 양 천구 신정·신월동, 강남구 개포·세곡동 일원	5.1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 동,과장동, 하광교동, 영통구 이의동(8.5km ²), 성 남시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창곡동, 금광동, 은행동, 양지동, 상대원동 일 원(3.02km ²),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원미동, 역곡 동, 소사동, 도당동,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 정동, 여월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소사 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 동, 괴안동, 계수동일원(9.42km ²),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팔곡일 동, 건전동, 사사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 동, 단원구 와동,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화 정동 일원(36.06km ²), 용인시 고기동, 동천동, 성북동, 신봉동 일원(3.6km ²), 광명시 광명동, 철 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506.68

		옥길동 일원(10.85km), 시흥시 광석동, 대야동, 방산동, 은행동, 거모동 일원(68.13km), 군포시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1.20km), 화성시 문호동, 북양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외동, 원천동, 장전동, 매송면 송라리, 속곡리,야목리, 어천리, 원리, 원평리, 봉담읍 내리,당하리, 덕리, 덕우리, 동화리, 마하리, 분천리, 상기리, 상리, 세곡리, 수기리, 수영리, 왕림리, 유리, 하가동리, 비봉면 구포리, 남전리, 삼화리,쌍학리, 양노리, 유포리, 자안리, 청요리 일원(46.50km),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향산리, 풍곡리, 패리, 전호리(7.29km),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상변천리, 엄미리, 오전리, 하변천리, 목현동, 직동, 회덕동, 삼동 일원(5.64km), 하남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향동 일원(18.81km),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30.75km),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22.67km),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선유동, 벽제동, 지축동, 대자동, 고양동, 원당동, 신원동, 삼송동, 원흥동, 관산동, 성사동, 주교동, 행주외동, 화정동, 도내동, 행주내동, 토당동, 대장동, 내곡동, 신평동, 일산동구 산황동, 풍동, 식사동, 백석동, 장항동 일원(39.00km), 의정부시 낙양동, 가능동, 고산동,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산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자일동, 호원동 일원(32.76km),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덕소리, 율석리, 도곡리, 월문리, 진접읍 내곡리, 내각리, 연평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용정리, 송능리, 사능리, 조안면 시우리,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금곡동, 평내동 일원(128.40km),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복지리, 장흥면 부곡리, 삼상리, 삼하리, 울대리, 일영리, 광사동, 남방동, 마전동, 만송동, 산북동, 어둔동, 유양동 일원(34.08 km)	
	광주권	광주시 동구 소태동, 용연동, 운림동, 월남동, 선교동, 내남동, 용산동, 서구 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남구 노대동, 진월동, 덕남동, 행암동, 임암동, 구소동,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	256.98

		석동, 석정동, 신장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북구 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흥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217.41km²),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혜리 일원(39.56km²)		
	대전권	대전시 동구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중구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서구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유성구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일부, 세동, 방동, 송정동 대덕구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136.52km²),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하산·봉암·학봉·송곡온천리(11.73km²),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20.69km²)	168.94	
	대구권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범물동, 삼덕동, 연호동, 옥수동, 이천동, 노변동, 시지동, 고모동, 달성군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일원	170.01	
	부산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석대동, 금정구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고촌리, 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	85.67	

			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경남권	창원시 사림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진해구 석동·자은·대장·비봉·현동·안곡·앵곡·대죽·인의·대영·남빈·태평·송죽·도만·도천·동상·행암·장천·풍호·경화동, 양산시 다방·명곡·평산·덕계·매곡동, 물금읍 물금리, 동면 개곡·법가·여락·내송·석산·금산리, 상북면 석계·대석리, 하북면 용연리 일원	146.08
		소 계		814.4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동대문구 이문·회경·장안동, 성북구 정릉동, 양천구 신월·신정·목동, 강남구 을현동, 송파구 장지동 일원	7.36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옥련동, 계양구 계산·굴현, 서운동 일원	4.23
수도권 녹지·용 도미지 정·비도 시지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하광교동, 권선구 권선동, 대왕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팔달구 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평동, 장안공, 교동, 매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화서동, 고등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18.15km), 성남시 창곡동,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북정동, 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12.39km),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일원(3.17km),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복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기흥구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보리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수지구 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북동, 상현동 일원(60.32km), 평택시 안중읍·오성면 전체, 포승읍 내기리, 도곡리, 원정리, 만호리, 회곡리, 신영리, 방림리, 석정리, 흥원리, 현덕면 도대리, 운정리, 화양리, 황산리, 인광리, 덕목리, 신왕리, 대안리, 기산리, 권관리, 장수리, 방축리, 고덕면 문곡리, 동청리, 궁리, 동고리,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내천리, 마무리, 회화리, 적봉리, 장동리, 금각리, 황구지리, 평택동, 통북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	802.88

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97.8km),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일원(0.12km), 화성시 기산동, 기안동, 남양동, 능동, 무송동, 반송동, 반월동, 배양동, 병점동, 북양동, 석우동, 송림동, 송산동, 신남동, 안녕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진안동, 활초동, 황계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마도면 고모리, 금당리, 두곡리, 백곡리, 석교리, 송정리, 슬항리, 쌍송리, 청원리, 해문리, 봉담읍 내리, 당하리, 덕리, 덕우리, 동화리, 마하리, 분천리, 상기리, 상리, 세곡리, 수기리, 수영리, 왕림리, 유리, 하가동리, 비봉면 구포리, 남전리, 삼화리, 쌍학리, 양노리, 유포리, 자안리, 청요리, 서신면, 광평리, 궁평리, 매화리, 백미리, 사곶리, 상안리, 송교리, 용두리, 장외리, 전곡리, 제부리, 홍법리, 송산면 고정리, 고지리, 고포리, 독지리, 마산리, 봉가리, 사강리, 삼존리, 신천리, 용포리, 육일리, 중송리, 지화리, 천등리, 칠곡리, 양감면 대양리, 사창리, 신왕리, 요당리, 용소리, 정문리, 우정읍 국화리, 매향리, 떡우리, 석천리, 운평리, 원안리, 이화리, 조암리, 주곡리, 한각리, 호곡리, 화산리, 화수리, 장안면 금의리, 노진리, 덕다리, 독정리, 사곡리, 사랑리, 석포리, 수촌리, 어은리, 장안리, 정남면 계향리, 관항리, 쾌랑리, 귀래리, 금복리, 덕절리, 망월리, 문학리, 발산리, 백미, 보통리, 수면리, 신리, 오일리, 용수리, 음양리, 제기리, 팔탄면 가재리, 고주리, 구장리, 기천리, 노하리, 덕천리, 매곡리, 월문리, 울암리, 지월리, 창곡리, 하저리, 해창리, 화당리, 갈천리, 관리, 구문천리, 길성리, 도이리, 동오리, 발안리, 방축리, 백토리, 상두리, 상신리, 송곡리, 수직리, 요리, 장집리, 제암리, 증거리, 평리, 하길리, 행정리, 화리현리, 향남읍 갈천리, 관리, 구문천리, 길성리, 도이리, 동오리, 발안리, 방축리, 백토리, 상두리, 상신리, 증거리, 평리, 송곡리, 수직리, 요리, 장집리, 제암리, 하길리, 행정리, 화리현리 일원(259.74km), 김포시 대곶면·통진읍 전체, 월곶면 군하리, 고막리, 갈산리, 고양리, 포내리, 하성면 마곡리, 석탄리, 원산리, 하사리, 봉성리, 전류리 일원(47.23km), 광주시 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중부면 광지원리, 오포읍 고산리, 실촌읍 삼리 일원(30.62km), 의왕시 고천동, 이동, 오전동, 내손동, 포일동 일

원(0.85km²), 오산시 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량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17.2km²),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일원(0.18km²),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동, 벽제동, 덕은동, 행신동, 향동동, 도내동, 신평동, 용두동, 원흥동, 행주내동, 현천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백석동, 중산동, 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곶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26.42km²), 의정부시 장암동, 금오동, 신곡동, 의정부동 일원(1.10km²), 파주시 조리읍·월롱면, 탄현면 전체,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134.0km²),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기산리, 방성리, 연곡리, 오산리, 홍죽리, 광적면 가남리, 광석리, 덕도리, 비암리, 석우리, 우고리, 고읍동, 광사동, 마전동, 만송동, 산북동, 삼송동,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봉양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 일원(40.21km²),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장현리, 내각리, 연평리, 진건읍 용정리, 송능리, 오남읍 오남리, 양지리, 팔현리 일원(53.38km²)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² 초과
	상업지역	200m ² 초과
	공업지역	660m ² 초과
	녹지지역	100m ²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m ²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m ² 초과
	임야	1,000m ²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m ² 초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691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남촌동 480-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1.5.17일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촌동 480-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남촌동 480-1번지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1. 5.27 ~ 2011. 6.10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1)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김용만 : 인천 동구 송현동 66-26 동부@ 4/107
 - 고돈윤 :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 102/1902
 - 김선익 :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2 초정마을두산@ 302/1002
 - 송애선 : 인천 남동구 남촌동 363-7

- 송선영 : 인천 남동구 수산동 388

8.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6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액 공제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만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5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액 공제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 자동계좌이체 방식만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300원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시세와 구세의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시세와 구세의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

실 · 과 · 소 · 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6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6조의4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

나. 근거법규 : 행정대집행법 제3조

다. 공시송달내용

- 의무자의 주거 및 성명

구 분	주 거	성 명
행 위 자	남동구 만수동 966 삼환아파트 203동 502호	윤영택
토 지 소 유 자	남동구 서창동 545 현대모닝사이드 302동 603호	김동수

- 대집행할 대상물 및 그소재지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 88-3번지 일원
- 대상물: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폐기물

- 송달할 서류의 종류

: 불임 계고서 참조

라. 공고기간 : 2011. 05. 30 ~ 2011. 06. 13(15일간)

마. 게시장소 : 남동구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

바.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032-453-2972)

2011. 0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도시관리과 제 2011-1호

계 고 서

구 분	주 거	성 명
행 위 자	남동구 만수동 966 삼환아파트 203동 502호	윤영택
토지소유자	남동구 서창동 545 현대모닝사이드 302동 603호	김동수

귀하께서 남동구 운연동 산88-3번지 일원에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항은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당하여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 계고서 송달일로 부터 10일 이내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대청소를 시행(청결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남동구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6조의4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담당부서 : 남동구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453-2972)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4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비관리청)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소2-10호선외 2개노선, 사업명 : 인천향촌주변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동부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 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향촌주거환경개선지역 주변도로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도 로(만수동 소2-10호선, 소2-1호선, 중3-2호선)
 - 【명 칭】 인천향촌주변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소 2-10호선 : B=9.0 ~ 12.5m, L=833m
 - 소 2-1호선 : B=8.0m, L=115m
 - 중 3-2호선 : B=12.0m, L=8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당초 : 대한주택공사 사장)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돌마로94)
(당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 【변경사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에 따른 회사명 및 주소 변경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 초】 2008. 03 ~ 2011. 06

【변 경】 2008. 03 ~ 2011. 12. 31

【변경사유】 국유지 포함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예정일 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44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2011-40호 '11.05.18)로 변경고시한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 및 만수2·3동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지구의 명칭 :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 면 적 : 203,241㎡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45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22호(2006.12.04)로 지정된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0)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5.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79,489.4	(인고) 2005. 07.18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간석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79,489.4	(인고) 2005. 07.18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m²)	비율(%)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합 계	79,489.4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79,489.4	100		
	계	79,489.4	100		
	공동주택	택 지 1	22,583	28.41	
		택 지 2	38,570	48.52	
	도시계획 시설	도 로	11,376.4	14.31	
		공 원	1,503	1.89	
		녹 지	1,934	2.43	
		주차장	1,765	2.22	
	기 타	존 치	1,334	1.68	
유보지		424	0.54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48	15-18	집산도로	257	대1-14	중2-377	일반도로	-	인고06-222 (‘06.12.04)	
기정	소로	1	229	10.5	국지도로	140	소3-64	중2-377	일반도로	-	인고06-222 (‘06.12.04)	
기정	대로	1	14	35-38	주간선도로	12,450	서해안로	중봉로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377	15	집산도로	339	소3-52	대1-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6	8~9	국지도로	251	소3-51	대1-14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2	227	9	국지도로	115	소3-64	대1-14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87	중2-377	간석동 37-1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461	간석동 지구계	중2-377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55	대1-14	소1-229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동 224-80번지 일원	1,765	(남동구 고시 2001.10.05)	-

나. 공간시설

①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간석 녹지-1	경관 녹지	간석동 911-1번지 일원	656	인고2006-222 (‘06.12.04)	
기정	③	간석 녹지-2	경관 녹지	간석동 912-4번지 일원	1,278	인고2006-222 (‘06.12.04)	-

②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간석 소공원-1	소공원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인고2006-222 (‘06.12.04)	
기정	간석 소공원-2	소공원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08	인고2006-222 (‘06.12.04)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있음)

○ 공동이용시설 결정 조서

구분	BL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기준)
			기정	변경	
공동 이용 시설	1BL	관리사무소	200㎡이상	200㎡이상	36.85㎡ 이상
		경 로 당	180㎡이상	180㎡이상	83.70㎡ 이상
		보 육 시 설	210㎡이상	210㎡이상	171.60㎡ 이상
		주민운동시설	450㎡이상	450㎡이상	450.00㎡ 이상
		어린이놀이터	850㎡이상	850㎡이상	787.00㎡ 이상
		주민휴게시설	2개소이상	2개소이상	2개소 이상
	2BL	관리사무소	150㎡이상	150㎡이상	47.10㎡이상
		경 로 당	210㎡이상	210㎡이상	104.20㎡이상
		보 육 시 설	210㎡이상	210㎡이상	171.60㎡이상
		주민운동시설	650㎡이상	650㎡이상	600.00㎡이상
		어린이놀이터	950㎡이상	992㎡이상	992.00㎡이상
		주민휴게시설	2개소이상	2개소이상	2개소이상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 용도	1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1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BL	· 15.00% 이하	
		2BL	· 15.00% 이하	
용 적 률		1BL	· 235.00%이하	
		2BL	· 230.00%이하	
높 이		1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2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연 면 적 (㎡)		1BL	· 80,000㎡이하	
		2BL	· 130,000㎡이하	

○ 종교용지(존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내 회복지시설 및 선교유치원 허용)	· 존치 대상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층 수		· 5층 이하	
연 면 적		· 2,700㎡ 이하	

○ 주차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층 수		· 3층 이하	
연 면 적		· 4,412.0㎡ 이하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경관

- 대상지내 건축물에 필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
- 색채, 스카이라인, 건축입면(옥탑부, 개구부)계획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도모
- 도시개성창조를 위한 단지 고유 이름, 색채(도색) 등 계획수립
- 건축물의 색채는 단순하고高明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권장하며, 슈퍼그래픽은 가급적 지양

○ 가로경관

- 교차점 및 경계부에 상징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 간선도로변(백범로) 경관녹지를 통한 가로경관 향상
- 사업지 경계부는 친환경적인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 설치 의무화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경관

- 주요 보행동선 축을 커뮤니티광장 및 휴게 및 놀이공간을 연계시켜 보행자 우선의 외부공간을 창출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 계획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녹지체계

- 대상지 북쪽에 위치한 보존녹지 지역인 만월산으로부터 형성되는 녹지축 연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 투수성 포장재 권장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

○ 우수의 재활용

- 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설치 및 리사이클시스템 도입 권장

○ 자연환경 보존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및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 종다양성에 기여하는 생태개념 적용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남동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함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사업시행자(변경있음)

○ 예정시기

- 기준년도 : 2005년 7월 18일
- 목표년도 : 기정 (2012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12월 31일)

※변경사유 : 보상기간 및 향후 공사기간을 감안한 사업기간 조정

○ 사업시행자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9,489.4	100.0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m ²)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일반 미관지구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26,700 (3,488)	890 (227)	양측15 (편측)	(인고) 1999년 9월 2일	

※ ()는 구역 내 면적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연면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용도	지정	1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2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1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2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BL	• 15.00% 이하	
		2BL	• 15.00% 이하	
용 적 률		1BL	• 235.00%이하	
		2BL	• 230.00%이하	
높 이		1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2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연 면 적 (m ²)		1BL	• 80,000m ² 이하	
		2BL	• 130,000m ² 이하	

- 종교용지(존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내 사회복지시설 및 선교유치원 허용)	· 존치 대상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층 수		· 5층 이하	
연 면 적		· 2,700㎡ 이하	

○ 주차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주차시설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층 수		· 3층 이하	
연 면 적		· 4,412.0㎡ 이하	

라.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형 태	·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상
색 채	·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화려한 색의 사용을 금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며 10%이내의 범위에서 강조색 사용 가능

마. 건축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제어 요소	위 치	내 용
건축 한계선	3m	· 공동주택용지 (1BL-1LOT)	·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3m	· 공동주택용지 (2BL-1LOT)	·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바. 환경보전 계획 또는 경관계획

①. 기본 방향

- 당해구역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보존가치가 높은 교목의 보존계획을 수립함
- 본 사업의 조경공사가 인천시 도심부의 녹지 확충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요 녹지체계와 연계방안을 수립함
- 단지내부의 성절토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지계획기법을 적용함

②. 환경보전 계획

○ 자연환경 보전계획

- 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우수유출 저감
- 보행자도로, 광장, 주차장은 투수성포장공법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을 극대화 함
- 식생블록포장
 - 자연석을 사용, 간격 띄우기를 하여 자생 초화류를 자연석 사이에 불러들이는 방법과 판석, 모래, 자갈 등 원재료를 이용하여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반침하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

-투수성포장재의 사용

- 투수성포장은 마사토나 투수성벽돌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투가 용이하며 자연 친화적인 색깔과 시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함
-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 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우수 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 유출을 감소시킴

○ 지형 변동 및 절·성토 균형

- 절·성토 발생시 토양이 대상지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 토양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표토를 보존하도록 함
- 토목공사 시 buffer zone을 설치하고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가능한 절토 및 성토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강우 시에 비닐 등을 씌워 토사유실을 막음

③. 경관계획

○ 대상지 내·외부가 조화된 이미지 창조

- 대상지 내 토지이용 및 단지배치계획, 조경계획, 교통시설물계획,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과 서로 연계하여 통합된 이미

지를 창조함

- 대상지외부의 자연환경 및 가로경관, 녹지 및 가로시설물 등이 단지경관 구성 요소들이 대상지와 서로 통일성을 갖으면서도 개성을 발휘하도록 계획함

○ 가치로운 경관 조망권 보호

-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만월산의 조망요소를 차폐하지 않도록 단지를 배치 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할 수 있도록 건축 물의 배치, 색채 및 외관에 변화를 줌

○ 도시차원의 가로경관 향상

- 개성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 상징공간(주요 진출입) 등을 특화함
- 시물레이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안 선정함

사. 건축물 경관계획

①. 장소성 부각

-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특화함

- 도시의 원경, 중경, 근경으로서 지각되는 건축물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 특화

②. 색채 및 입면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정돈된 단지이미지 부각

- 대상지 이미지를 특화시킴과 동시에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 범위 제시

- 건축물의 입면과 측면, 옥탑부, 개구부 디자인 등 단지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시

아. 대상지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 계획

- 북쪽에 위치한 보존녹지 및 주변 지역풍토색을 고려하여 Y계열 색상팔레트 추출

자. 도시스카이라인계획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도록 단지 내 건축물 높이 계획으로 단지 내부와 외부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계획 함

- 이외에도 랜드마크형 건축물이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로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함

차. 녹지계획

①. 기본방향

- 녹지 및 광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들이 바라 볼 수 있는 조망대상으로서 그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근, 경, 중

경, 원경차원의 구상

-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루면서 사계절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조경 수종 선택
- 보도포장은 배경을 이루는 요소로서 보행안전 및 미관을 고려하여 색조를 선정하고 가급적 자연소재를 활용함
- 보도 폭,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한 보행공간의 쾌적성을 증진시킴
- 북쪽에 위치한 보존녹지지역인 만월산 으로부터 형성되는 녹지축을 자연스럽게 단지내 유입
- 녹지공간은 도시생태계 보전의 거점공간이므로 인천시에서 보여지는 자생 수종을 조경수로 선정하여 대상지 내의 녹지와 자연녹지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도시녹지요소로서 점(수목, 소공원), 선(녹도, 녹지띠), 면(공원, 녹지, 광장)적인 녹지들이 가급적 단절되지 않도록 단지 내부 조경계획을 수립함
- 생활환경의 질과 관련하여 소음 및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경관녹지를 단지 경계부에 전면적으로 배치함
- 단지의 경계나 지형이 급변하는 부분 등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녹지의 연계 수단으로 활용하고 단절된 녹지의 길이는 최소화함

카. 가로시설물 설치

①. 기본방향

○ 가로 시설물

- 색채 및 형태, 테마 등 일체감 주는 도시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함
- 지역의 인상을 좌우하는 경관형성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관의 엑센트로 역할 하도록 디자인 특화
- 배치장소를 유형별·위계별로 분류, 각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시설물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물들의 기능적 연계체계를 구축, 가능한 복수의 기능을 하나로 일체화하여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시공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재료선정과 제작방법을 고려
- 가로시설물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
- 공중보건과 안전유지를 위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피부접촉에 적합한 재료, 기능성 등을 고려
- 인간행태와 인간적 비례에 적합한 크기, 재료, 설치형식이 되도록 하며,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함
-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배치
- 가로시설물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경관에서도 거리의 엑센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타. 교통처리계획

①. 주변 가로망 현황

- 본 사업지주변 가로망체계를 살펴보면,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이 격자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사업지 남측과 접한 백범로가 동서방향으로 간석오거리와 인천대공원을 연결하고 있으며, 사업지 남동측으로 호구포길이 남북방향으로 간석사거리와 남동공단을 연결하고 있다.
- 또한, 사업지 동측으로 장재로와 주안산길이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다.

파.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

-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등 계획
- 간선도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하고 간선도로변의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는 차량진출입 금지
- 보행자 전용도로 마련과 가구별 순환도로체계 구축

1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20㎡ 이하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90.0% 이상
규모별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건교부고시 2006-273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기준) 준수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의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면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 건설(전면개량방식)

12.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동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량	철거 건물	철거 거주	
연립주택	2	596	1	-	595	-	종교시설 존치 (간석교회)
다세대주택	34						
단독주택	268						
다가구주택	22						
공동주택	8						
근린생활시설	8						
종교시설	2						
기타	13						
무허가	239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어 요소	위치	내용
건축 한계선	3m	·공동주택용지 (1BL-1LOT)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3m	·공동주택용지 (2BL-1LOT)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변경없음)

구분	내용
교통	-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시, 안전선 표시등을 설치함 - 교통사고 발생가능지역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화재 및 지진	-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 준수
홍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1BL	25,004	1	간석동 224-179번지 일원	22,583	공동주택용지
			2	간석동 224-80번지 일원	1,765	노외주차장
			3	간석동 923-5번지 일원	656	경관녹지
기정	2BL	43,109	1	간석동 224-314번지 일원	38,570	공동주택용지
			2	간석동 224-222번지 일원	1,334	종교시설용지(준치)
			3	간석동 225-200번지 일원	234	유보지
			4	간석동 225-203번지 일원	92	유보지
			5	간석동 225-27번지 일원	98	유보지
			6	간석동 911-16번지 일원	1,278	경관녹지
			7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공원(소공원)
			8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08	공원(소공원)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계획(변경있음)

구분	TYPE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임대 비율(%)		법정기준		임대 형식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BL - 1LOT	40㎡ 이하	39	39	138	138	10.5%	10.01%	106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의 8% 이상)	111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의 8% 이상)	5년 공공 임대	5년 공공 임대
	40㎡ ~ 60㎡ 이하	59	59	178	178	13.6%	12.91%				
합계				316	316	24.1%	22.92%	263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276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19. 이행조건사항 (변경없음)

-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옹벽제거 등) 및 경관계획 수립
- 사업지구 우측(2BL 3,4,5LOT 등) 구역계 정형화
- 만월산 터널부근 진출입구에 대한 교통처리대책 수립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